

MSDS 수입품 기재 요령이 궁금합니다!

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합니다

글 편집실



Q

MSDS 제출 시 수입품의 경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

A

MSDS(Material Safety Data Sheet, 물질안전보건자료)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·위험성 정보, 응급조치요령,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,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돼 있습니다. 즉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고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합니다. 반드시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그 물질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용해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MSDS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·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. MSDS 작성 및 제출의 주체는 MSDS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혹은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입니다. 제출서류 목록은 먼저 MSDS와 MSDS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·함유량입니다. 이 중 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재된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국외 제조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운 수입품의 경우 '화학물질 확인서류'를 국외 제조자로부터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규칙[별지 제62호 서식]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. 또한 수입품의 경우 문의 사항 발생 또는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(회사명, 주소, 전화번호 등)를 기재해야 합니다. ☺

MSDS 제출 방법

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상단의 'MSDS 제출' 통해 작성 가능
회원가입 필요 (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- MSDS 제출 - 최초 MSDS 제출)

MSDS 작성 및 제도-운영 ☎ msds.kosha.or.kr ☎ 042-869-0388~9

